

## 연구논문

소규모 개발이 수반되는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온천공보호구역을 중심으로 -

김정현\* · 김임순 · 한상욱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주)도화종합기술공사\*  
(2007년 10월 29일 접수, 2008년 5월 2일 승인)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in a Administrative Plan & Program Including a Small-Scale Development  
- Focus on Hot Spring Hole Wildness -

Jeong-Hyun Kim\* · Im-Soon Kim · Sang-Wook Ha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Kwangwoon University, DOHWA CONSULTING ENG\*  
(Manuscript received 29 October 2007; accepted 2 May 2008)

### Abstract

Korea has made the rapid economical development under the condition with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ow available land. In this context, conservation of land environment, connected directly with living quality of human, has mostly ignored.

Prior Environment Review System(PERS) is the one to investigate the locational validity, environmental impacts,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the early stage of administrative plan or development project.

PERS was amended to include SEA(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n June 1, 2006.

But,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loss of administrative ability, cost, and time, have been appeared, since the system is applied to all administrative plans without any distinction and plans or projects are delayed generally.

In this study, the weaknesses of PERS were indicated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cluding literature survey, study of legal and internet database, and the recently published PERS reports.

Based on that, the improvement schemes were suggested to be harmonized with the nature of SEA. This study was mainly focused on a PERS for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al area of hot-spring wells, conducted by authors.

Key words : Administrative Plan&Program, PERS(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SEA, Hot Spring Hole

## 1. 서론

###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의 가용면적이 적은 여건에서 개발 지향적 정책우선으로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은 후순위로 밀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환경성검토협의회의 포함)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을 고려토록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당초 38개 행정계획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도로, 철도, 댐 등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83개 행정계획으로 확대 2006년 6월 1일부터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체계를 갖춘 제도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확대된 행정계획들이 각각 계획의 특성과 유형 및 지역, 주변환경 등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다른데 시행 절차면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력의 손실, 사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확대 적용된 행정계획 제

도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행정계획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국내외 각종 서지자료, 법령 및 인터넷 자료, 최근에 발간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종합분석하여 행정계획에 수반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평가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확대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적용이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협의된 계획이 소수에 불과하여 저자가 직접 수행한 『온천공보호지구의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사례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II. 연구내용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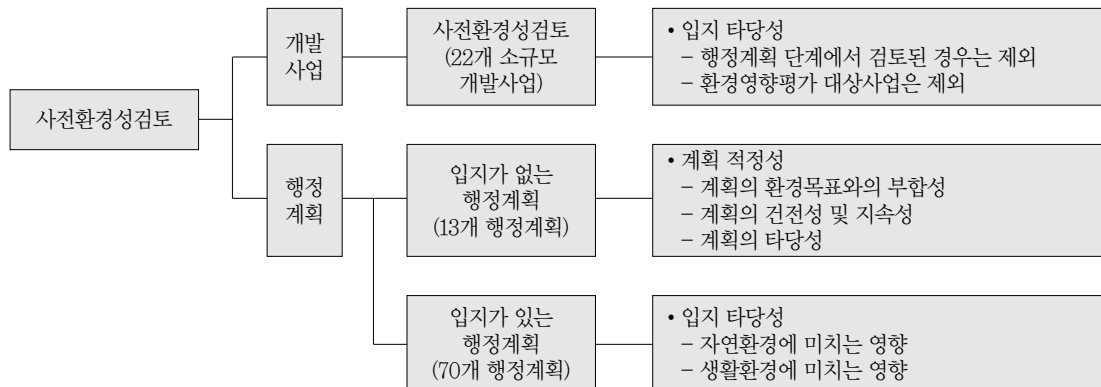


그림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비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74개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의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예정 지구지정,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 승인전 미리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

## 2.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계획은 17개 분야 83개이며, 이는 입지 수반 없는 13개 행정계획과 입지가 수반되는 70개 행정계획으로 구분된다.

개발사업의 경우 22개 소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 1)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개념 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개념 정의

| 구 분 | 행 정 계 획  | 개 발 사 업  |
|-----|--|--|
| 정 의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의 설정행위. |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원, 재료,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유·무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 |

자료 : 김임순, 2004, 송영일 외4,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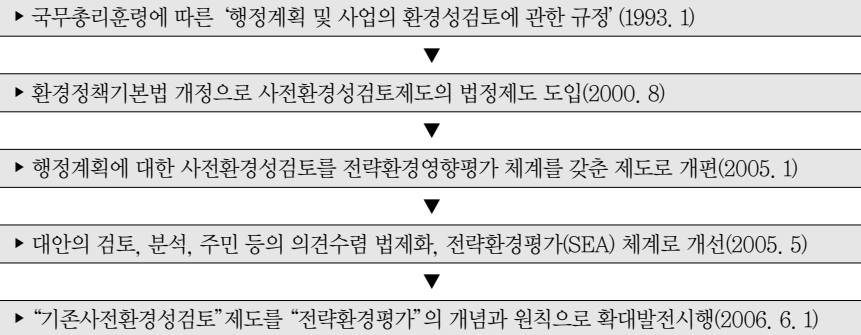


그림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사전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의 제시와 모색을 통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변천

환경영향평가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중도에 계획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중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이며 그 변천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요약된다.

####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배경 및 주요 개선내용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배경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배경은 첫째,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상당수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갈등 사례 빈발. 둘째, 행정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로써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갈등이 발생. 셋째,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 사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체계로 운영, 대안 모색과 검토 결과의 환류가 어려운 문제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제도의 주요개선 내용

전략환경평가 체계를 갖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2005년 5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2006년 5월 30일에는 동법 시행령은 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운영 중에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보전과 개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기대된다.

시기면에서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대안설정과 분석을 통해 환경측면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확대 및 범위를 규정. 둘째, 대안설정·분석 의무화. 셋째,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과 스코핑 실시. 넷째, 주민 등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다섯째,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제출방법. 여섯째,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규정 신설. 일곱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차별화로 요약된다.

#### 5. 온천공보호구역 관련 내용

##### 1) 온천공보호구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란 시장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림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표 3. 시·도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현황(2005. 12. 31)

|                     |        |        |        |         |         |         |         |           |
|---------------------|--------|--------|--------|---------|---------|---------|---------|-----------|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강원        |
| 개소                  | 7      | 12     | 7      | 1       | 1       | 1       | 14      | 8         |
| 면적(m <sup>2</sup> ) | 58,740 | 82,533 | 63,888 | 18,711  | 2,376   | 29,733  | 376,553 | 177,705   |
| 구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합계        |
| 개소                  | 1      | 3      | 1      | 4       | 30      | 14      | 1       | 105       |
| 면적(m <sup>2</sup> ) | 6,831  | 71,049 | 33,000 | 141,900 | 343,794 | 215,226 | 39,270  | 1,661,300 |

2) 시·도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현황

2005. 12. 31일 기준으로 시·도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총 105개소에 약 1,661,300m<sup>2</sup>(평균 15,820m<sup>2</sup>)가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자치부 통계자료 재정리, 2007. 6).

3)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시 적용법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시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과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다.

- 온천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적정양수량 포함)

- 예정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
-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기관의 검사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따라서 현재 온천법에서는 온천개발시 환경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로 구체적인 작성방안이나 규정이 없이 포괄적인 의미로 명시되어 각각의 해석에 따라 다른 의견에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4)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에 신규로 추가된 온천



그림 4.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절차

공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 동일)의 지정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고, 시도지사가 승인전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협의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다.

**6. 적용사례를 통해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직접 수행한 충청북도 ○○지역의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를 인용하였다.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사례 개요(○○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검토서)**

- 행정계획명 :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위치 : 충청북도 ○○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면적 : 1,810.8m<sup>2</sup>(온천법기준 : 40,000m<sup>2</sup>이내)
- 온천공보호구역 예정지 용도지역별 현황 : 도

시지역내 중심상업지역 1,810.8m<sup>2</sup>

- 대상지 현황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대지면적 : 1,810.8m<sup>2</sup>, 0.02%)는 기 개발된 ○○산단(총부지면적 : 9,450천m<sup>2</sup>)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이미 산단단지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 개발된 공간으로서 현재 나지상태의 토지에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하는 행정계획임.

**2) 환경성검토협의회 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

**(1) 환경성검토협의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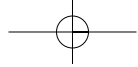
-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자 총 10인중 8명 참석
-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총 3건에 의견이 제시되었음.



180일

※ 상기 일정중 초안 및 본안보고서 작성기간은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가 타 선수행과정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조건임.

그림 5.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관련 소요일정



- 도심지내 소규모 행정계획이라 대안의 설정 분석을 할 수 없었음.
- 의견 : 제시된 3건 의견 모두 관련법에 따라 실시 반영하여야 할 부분이었음.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작성방법 및 해당법령

#### (2) 의견수렴 및 공람, 주민설명회 결과

- 공람, 공고 : 2개 신문사 공고
- 주민공람 기간 : 20일간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설명회 참석자 총 3인
- 설명회 참석자 의견 없음
- 주민 공람기간 동안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관련 소요일정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관련 절차는 **그림 5와** 같고 지정승인까지 총 6개월(18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 사전환경성검토 수행에 따른 일정이 소요되었다.

#### 4)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의견

기 개발된 지역내에서 실시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결과 수질오염총량제를 제외한 다른 의견 없었다.

#### 5) 수행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사례 고찰이 현재 확대 적용된 사전환경성검토에 모든 문제점을 표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소규모 기 개발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다른 행정계획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와 유사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부가하여 해당 행정계획에 종류나 사업대상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는 간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도입(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역할 및 대안 설정·분석 제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역할은 검토항목과 범위, 대안의 종류를 결정하는 스코핑(scoping)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본 행정계획은 기 개발된 제한적인 지역에서 실시하는 계획이라 대안적인 역할이나 제시될 의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2)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저조 및 대안적인 방법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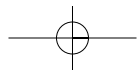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위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이 법적규정을 준수 신문공고 등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제시된 주민의견과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까지 수반되어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함께 요구되었다.

#### (3) 사업지연

사례 고찰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수반되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시까지 약 6개월(약 180일)이 소요됨으로 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표 4.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의견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총량관리 단위 유역상 “○○”에 속하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li> <li>※ ○○군에서 수립중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에 반영하여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수는 ○○○○산업단지내 ○○환경사업소로 전량 이송·처리 하여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온천수 저장량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양수량 이하로 채수하여야 하며, 계측기(계량기, 온도계, 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여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환경성 검토키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li> </ul>                       |



(4) 행정력의 과다투입

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사례 고찰의 행정계획 (현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운영중인 98%가 40,000m<sup>2</sup>이하, 10,000m<sup>2</sup>이하 60%이하, 본 사례검토 면적: 1,810m<sup>2</sup>)과 도시관리 계획의 모든 행정계획 수행을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개최 의견 통보, 실과협의, 주민공람 공고,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섭외 및 선정, 승인 기관 해당실과, 지방 환경청 및 그 산하단체 등의 여러 분야의 행정력이 투입되었다.

(5) 개선방안 고찰

소규모의 개발이 수반되는 모든 행정계획에까지 전략환경평가 체계를 갖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행정계획에 포함된 모든 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전략환경평가(SEA)의 취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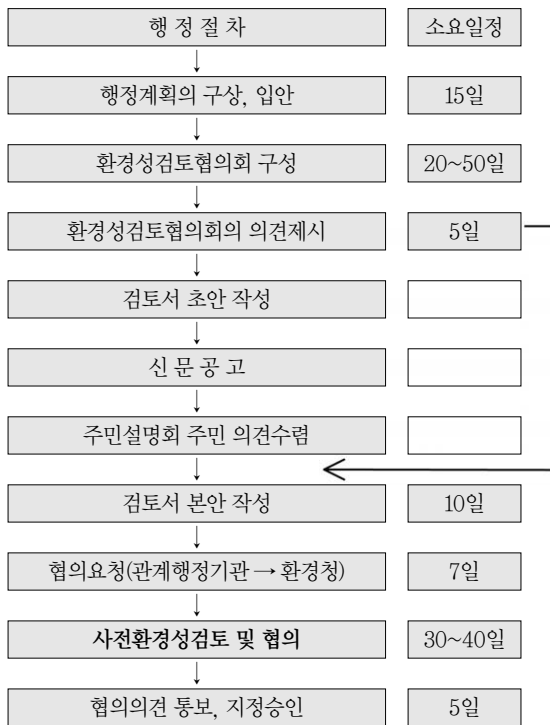
부합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의 한 방안으로 검토서 초안작성(15일), 신문공고(10일),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수렴(20일)절차를 생략하는 아래와 같은 간이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소요일수를 단축할 수 있어 사업지연 문제, 행정력의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전략환경평가 개념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본격 도입한지 1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수행 사례만으로 모든 문제점을 파악 도출할 수는 없지만 그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다른 행정계획 운영 중에 발생되고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성검토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해당 행정계획에 종류나 사업대상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 (간이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 도입)

환경성검토협의회 결정으로 경제적 비용, 행정적 손실, 사업의 지연,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중 초안 및 분안보고서 작성기간은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가 타 수행과정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조건인, 최소 45일의 수행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6.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제안안

개념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정착될 수 있는 연구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당초 38개에서 83개로 확대되었으나 각 계획의 특성과 유형 및 지역, 주변환경 등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다른데 시행 절차를 모두 동일하게 도입한 결과 사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행정력의 손실 등 일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재조정과 환경성검토 협의회 기능의 확대를 통한 간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모든 행정계획에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중에 대한 의견수렴은 사업의 지연, 유보 또는 취소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효과는 미비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하여 그 취지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어 다른 보완적인 방법이 함께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실정에 맞는 행정계획 대상과 전략환경평가(SEA) 시행방안의 구축 및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거치며 발전해 왔듯이 전략환경평가 제도 또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숙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개발과 보전의 개념이 발전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 2. 제언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된 이유는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지향적 행정계획으로 인한 환경적인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과 발전이 꼭 이루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행정력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외에 정부 각 부처별 전략환경평가제도 통합, 적정한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기준 제정, 검토담당자의 적정한 배치, 전문성 확보 통한 협의기간 단축, 협의내용과

반영여부를 Feedback 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개선, 개발입지의 선정을 위한 자료 DB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련법 체계 정비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전략환경평가(SEA)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6. 5. 국토업무편람, pp.27~49.
- 광운대학교 광운전략환경평가연구소, 2005. 11. 지속성패러다임하의 전략환경평가, [이론적배경, 지원기술 및 관련지침 적용사례] pp.2~83.
- 김임순, 한상욱, 2004, 도표로 본 환경평가, (주)블랙박스, pp.80~313.
- 김임순 외 2003, 전략환경평가의제도화동향과국내도입방안, 환경영향평가, 12(3), 171-181.
- 김임순 외 3인, 2004,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의 관한 연구, 대안적 환경평가: APEMIA MODEL의 제안, 환경정책, 12(2), 81-110.
- 김임순, 한상욱, 2006,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평가 -, (주)복스힐, pp.111~225.
- 김임순, 한상욱 외 4인, 2003, 전략환경평가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도입방안, 환경영향평가, 12(3), 171-188.
- 김임순, 2004. 2.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pp5~8, 24~44, 123~138.
- 김임순, 2005. 11. 환경평가의 원칙과 절차, 환경평가와 환경경영 한국환경기술인회, 2005년 추계세미나, 한국환경기술인회연보 제10집, pp.225~268.
- 김임순, 한상욱 외2인, 2003, 최신환경영향평가(이론과실제), 도서출판동화기술, pp185~224, 238~262.
- 송영일 외, 2002. 1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26~29, 59, 63~68.
- 송영일, 2005, 4(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행 및 기대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19~30.
- 유현석, 2006. 12.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적용 방안 중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해, pp.7~12.
- 이용우, 2006. 12.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적용방안, pp.3~6.
- 최종수, 2001, 사전환경검토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지개발기술학술지, 50, 138-151.
- 한강유역환경청, 2006,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 및 개선현황, pp.1~25.
- Barry Dalal-Clayton and Barry Sadler, 2005,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pp.1~113.
- Barry Sadler, 1996, Internation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p.1~36.
- CEQ, 2007, Collaboration in NEPA A Handbook for NEPA Practitioners, Revised DRAFT March 16, 2007, pp.18~21.
- IAIA, 2006, Power, Poverty and Sustainability,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26th Annual Conferenc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Abstracts volume pp.23~26.
- IAIA, 2003,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Special Publication Series No. 2, pp.1-8.
- IAIA, 2002, The linkages between Impact Assess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s pp.1-12.
- Maria Rosário Partidário, 2003,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Current Practices, Future Demands and Capacity-Building nee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pp.22-41.
- Rau and David C. Wooten, 1980,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Handbook, McGRAW-HILL BOOK Company, pp.13-15.
- Riki, 2003, The thriver and Phillip Minas, Ensuring effective Substantiality Appraisal,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Volume 21, Number 2, ISSN, pp.1461-5517.
- Theodore S. Glickman, Michael Gough, Readings in Risk, Resources for the Future. The partnership Discussion on WEHAB (2000), pp.1-14.
- US. CEQ, 2003, Moderning NEPA Implementation, pp.1-18, 35-45.
- US. CEQ, 1997,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 study of its effectiveness after twenty five years, pp.1-47.

최종원고채택 08. 05. 08